##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 박홍배·김태선·박 정

서삼석 · 안호영 · 박해철

박성준 • 한민수 • 김현정

서영교 • 박정현 • 민병덕

맹성규 • 김주영 • 김남근

이연희 • 정진욱 • 한준호

전현희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생태·자연도는 산·하천·내륙습지·호소(湖沼)·농지·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, 자연성,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, 생태·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 시에 '보전 및 복원'을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각종 개발사업 검토 및 환경계획 수립 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.

이러한 생태·자연도의 등급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데, 최근 생태·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 용하고 등급을 변경한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.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신청서 반려 등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, 정상적인 이의신청 처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등급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 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.

이에,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 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·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).

아울러,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,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의신청에 활용하는 경우,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제34조의5 및 제64조제3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제34조의6으로 하고,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생태·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생태·자연도 등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생태·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이의신청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
- 3. 이의신청 대상 토지의 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
-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서
- 2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
- 3.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자료
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, 생태·자연도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.
- ⑤ 생태·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의3(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서의 반려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·자연도 이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
  - 1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 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
  - 2.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, 자료가 미비하 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  - 3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서,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 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
- 제34조의4(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변경의 철회) 환경부장 관은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생태·자연도 등급을 변경하여 고시 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를 철

회 할 수 있다.

- 1. 이의신청서,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이의신청을 위한 자료를 거 짓으로 작성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 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
- 제34조의5(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의 대행) ①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(이하 "환경영향평가업자"라 한다)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1. 생태 자연도 이의신청서
  - 2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
  - ②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 다음 각 호의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- 1. 이의신청서,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 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하지 아니할 것
- 제6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자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4조의2(생태·자연도에 대한
	이의신청 및 처리) ① 다음 각
	호의 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
	고시된 생태·자연도 등급에 대
	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
	관에게 생태·자연도에 대한 이
	의신청을 할 수 있다.
	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	2. 이의신청 대상 지역을 관할
	하는 시・도지사
	3. 이의신청 대상 토지의 소유
	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
	<u>얻은 자</u>
	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
	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
	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	1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서
	2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지역
	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
	3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
	<u>는 자료</u>
	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
	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
	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료의

<신 설>

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, 생태·자연도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생태·자연도에 대한 이의신 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4조의3(생태·자연도 이의신 청서의 반려) 환경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 ·자연도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
  - 1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
  - 2.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, 자료가 미 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

<신 설>

<신 설>

은 경우

- 3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서,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

제34조의4(생태·자연도 이의신 청에 따른 등급 변경의 철회)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4항 에 따라 생태·자연도 등급을 변경하여 고시 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 된 경우에 는 변경 고시를 철회 할 수 있 다.

- 1. 이의신청서, 자연환경조사보

   고서 등 이의신청을 위한 자

   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
- 제34조의5(생태·자연도 이의신 청의 대행) ① 생태·자연도 이 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

제34조의2 (생략)

제6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u>호의</u>	서류	를 🤇	작성	할 1	대에		환
<u>경영</u>	향평/	가법_	」제	542	조제]	1항	에
따라	환경	영향	평가	.업	등록	을	<u>한</u>
자(이	하 "	'환경	형영형	· 평	가업	자"	라
한다]	)에게	コ	작성	을	대형	행하	<u>게</u>
<u>할 수</u>	- 있다	<u>}.</u>					

- 1. 생태 · 자연도 이의신청서
- 2. 생태·자연도 이의신청지역 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
- ②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1항 에 따른 대행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1. 이의신청서, 자연환경조사보 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거짓 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하지 아니할 것

<u>제34조의6</u> (현행 제34조의2와 같음)

제64조(벌칙)	
----------	--

\_\_\_\_\_

-----

-----.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 < 선 설>
 3.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

 생태・자연도 이의신청 자료
 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거짓

 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
 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

 받은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

<u>한 자</u>